

기준일) 이전 6개월부터 이후 3개월까지인 것과 다른점 확인

- 유사부동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

※ II. 시가인정액산정-[3] 유사 부동산의매매등시가인정액의적용 참고

○ 평가기간내 적용할 수 있는 유사부동산의 매매등 시가인정액이 없을 경우, 확장된 평가기간 유사부동산의 매매등 시가인정액 적용가능 - 과세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, 지방세심의위원회에 확장된 평가기간 시가인정액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

#### ④ 시가표준액 적용

○ ①~③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

#### ⑤ 사후관리

○ 신고·납부이후 새로운 시가인정액이 확인될 경우, 지자체장은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수정신고하도록 안내

※ 납세자협력의무 최소화 및 과소신고가산세부담완화

### ⑤ 가산세 적용

○ (무신고) 무신고가산세,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하여 과세

○ (과소신고 가산세) 당초 신고기한 내에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한 후, 과세권자가 경정하여 직권 부과하기 전에 다른 시가인정액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**과소신고가산세 제외**

※ 과세관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수정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소 신고 가산세부과

○ (납부불성실 가산세)

- 신고기간 내 정당하게 취득세 신고 및 “등기”를 하고, 이후 과세 관청이 조사한 새로운 시가인정액으로 수정되어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라면,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가산세감면의 “정당한사유\*”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

- 과세관청의 요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시가인정액으로 결정된 경우, “정당한 사유”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감면 적용

\* 제도시행 초기인 점, 시가인정액은 과세관청이 제공하는 과세정보를 통해 확인하는 등 납세자의 취득세 신고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

※ 과세관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안내한 가액이 아닌 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